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배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종류, 구성과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손해배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배상 심의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해촉(안 제4조, 제6조,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2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해촉 사유로 정신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

나. 심의위원회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전문위원회로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의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조사판정 50명 이내, 재심의 30명 이내)와 위원 세부 구성(전문의, 판사·검사 등) 규정

다. 손해배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5조)

신규신청자는 본인확인, 기존피해 증빙(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사망 등), 향후피해 증빙(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소득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안 제17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결정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도록 함

마. 배상결정 동의 및 배상금 지급신청(안 제20조, 제21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피해자에 대한 교육 지원(안 제29조, 제30조)

중·고등학교 입학 시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최대 8학기 이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안 제36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은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총액에서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을 차감하고,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등을 고려한 식에 따라 산정함

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의 피해구제 분담금(안 제38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를 별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자. 분담금 납부 의무자가 미납 시 공표 근거(안 제43조)

분담금 미납자에 대해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기후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성명·상호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성 화학물질 확인 기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말한다.

제3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

·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를 말한다.

1. 역학조사

2. 건강모니터링

3. 그 밖에 역학연구, 독성연구, 임상의학연구 등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2장 손해배상 등

제4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가습기살균제 피해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법무부 소속 국가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존여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국무총리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조직)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배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판정전문위원회

2. 재심의전문위원회

②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고, 재심의전문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제11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專門醫)

2.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毒性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심의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심의전문위원회(이하 “재심의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의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③ 재심의전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의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의전문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의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의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① 심의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의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정보시스템 이용 등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 배상대상이 되는 손해증명을 할 수 있는 보유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 조사
2.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3.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 중 제2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하여금 요청사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금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2.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3. 신청인이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나.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약제비 세부내역서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거래내역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간병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간병 필요성

에 대한 의사소견서

2)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애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및 후유장애진단서

6.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장제(葬祭)비 영수증 등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법률 제21526호) 부칙 제6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와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한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신청서에 이를 표시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6조(보완요청)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보완할 사항
2. 보완이 필요한 이유
3. 보완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 기간은 180일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금의 결정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의 유족배상(遺族賠償)

나. 장례비

다. 위자료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가. 치료비

나. 간병비

다. 가목의 치료로 인하여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休業賠償)

라.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애(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
의 장애배상(障害賠償)

마. 위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세부적인 결정 기준등은 「국가배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세부적인 결정기준을 정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결정서의 송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이하 “배상결

정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심의위원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에 배상결정서 정본 1통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배상결정서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2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등본 1통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심의) ①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 사항

2. 재심의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

3. 결정 내용 및 이유

4. 결정 연월일

④ 심의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제18조에 따른 결정서에 기재된 사항 중 결정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제2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에게 동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동의 및 지급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신청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에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서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을 한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 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인낙·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인낙·조정조서 정본 등을 제

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급방법) ① 심의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제2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손해배상금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급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계속치료비의 배상 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이하 “계속치료비”라 한다)를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신청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속치료비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되, 제20조에 따른 배상금 동의 및 지급신청서의 제출일 이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직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이하 “치료비”라 한다)과 직접 간병에 소요된 비용(이하 “간병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23조(계속치료비의 지급 신청 및 절차 등) ①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

해배상금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치료비 지급신청서 및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금액

③ 간병비는 별표 2와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속치료비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계속치료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속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치료비를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계속치료비의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계속치료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제24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설립·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이하 “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립·운영한다.

② 피해관리센터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법률 상담
3.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이행요청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관리센터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피해관리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을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지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습기살균제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등 환경보건 관련 조사·연구 또는 업무 수행 실적
2. 참여인력·조직의 전문성 및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3.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조사·연구·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건강상태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2. 가습기살균제와 독성화학물질에 의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연구, 지원 및 협력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

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조사·연구 또는 업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협력 등) ① 피해관리센터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보

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는 법 제20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를 상호 활용할 수 있다.

② 피해관리센터와 보건센터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27조(건강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의 환경오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업무 실적

2. 참여인력·조직·시설·장비 등의 전문성 및 적합성

3.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을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건강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① 피해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모

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해자등이 사망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기관이 서면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중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모니터링을 받지 아니하여 의학적 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2. 전문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계속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한 경우

3. 그 밖에 계속치료비 지급 사유가 없어진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계속치료비의 지급결정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중단일 60일 전에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속치료비의 지급중단은 제5항에 따라 통보한 지급중단일부터 기산한다.

⑦ 피해자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계속치료비 지급중단일 전에 건강모니터링을 받아 계속치료비 지급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급중단일부터 전문기관의 건강모니터링의 결과를 받은 날까지의 계속치료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29조(지정입학 등 교육지원)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정원서·입학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도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지원자 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군 내의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
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사람이 가습기살
균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1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구체적인
범위·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0조(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8학기 이내의 등록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
가가 조성한 장학금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세부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제31조(계속치료비 지원)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계속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
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요

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고, 그 지급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제33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해관리센터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금·계속치료비의 지급, 차입금·이자
의 상환 및 필요한 경비 또는 비용의 처리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 및 운용
3. 법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환수

제34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피해관리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
는 사람.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
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분야별 전문과목의 전문의

다. 환경보건, 독성학, 인문·사회학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마. 자산운용 또는 재무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9조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수당·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국무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법 제28조제2호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이하 “지급검토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경우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를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을 감액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고 분담금의 원활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와 배상 이행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5항에 따른 배상 이행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분담금의 총액은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산한 손해배상금 총액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분담금 = (분담금 총액 - 제38조에 따른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 (가습기살균제사용비율×2.5 + 가습기살균제판매량비율×1)/3.5

②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이란 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에 따른 지급신청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이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또는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
2.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3. 제3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4. 제35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수는 그 노출된 사람의 수에 분담금의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

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
서 제외한다.

1. 제35조제3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가습기살균제 사
업자의 판매수량

2. 제35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
매수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수량

⑦ 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
8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제37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
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
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
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
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
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억5천만원 또는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 합계액의 1천분의 5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⑧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각 사업자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원료물질사업자의 분담금 산정)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45로 한다

제39조(가산금)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려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의 횟수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 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추가분담금의 징수 및 감면)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산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완납한 자

2. 제35조제5항에 따른 배상 이행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한 자

제42조(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분

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 의무자 또는 그 의무를 승계한 자가 그 사업장을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납부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잔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전일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외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미납 등 공표 방법)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에 실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무미이행사업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2. 명단 공표 연도 직전 3년간 의무미이행사업자의 처분 이력 및 의무미이행 금액

제5장 보칙

제44조(조사 및 보고 등)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2. 질병관리청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8.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
 9.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관
 10.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자
- 제45조(자료요청 및 제공)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심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46조(정보 청구의 절차·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정보의 제공·열람 명령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2. 법 제38조에 따른 조사(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제3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공개
5. 제25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따른 보건센터의 추가 지정, 지정기간 연장, 운영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6. 제25조제7항에 따른 보건센터의 조사·연구, 업무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해관리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의 실시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중단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4.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중지 및 중지사유

통보

5. 법 제26조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6.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의 관리·운용
 7. 법 제38조에 따른 조사(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정보시스템 이용 등 지원
 9.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10. 제23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11. 제28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의 실시 및 사후관리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분담금 부과·징수
 2. 법 제31조에 따른 분담금 사후정산, 독촉 및 강제징수
 3. 법 제32조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
 4. 법 제33조에 따른 추가 징수
 5.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신고접수
 6.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외 이전신고
 7.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정 및 통보
 8. 법 제37조에 따른 명단 공표
 9. 법 제38조에 따른 조사(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제49조(이행강제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명령을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명령불이행기간”이라 한다)이 365일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2. 명령불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이 되는 날부터는 1일당 25만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 4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지급검토전문위원회,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교육부장관, 교육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재심의 의결
2.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
3. 법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결정
4.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5.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
6. 법 제25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
7.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요청
8. 피해관리센터 및 보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

제6장 과태료

제5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피해자 정보 관련 자료의 이관) 이 영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가 수집·관리하는 피해자 정보에 관한 자료는 제2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가 수집·관리하는 피해자 정보에 관한 자료로 본다.

제3조(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자로서 제18조에 따른 배상결정서를 받기 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9조에 따른 지정입학 등 교육지원 및 제30조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과 법 제24조에 따른 치료휴가를 적용한다.

제4조(분담금 산정 시 환경노출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등의 결과는 제36조에 따른 분담금 산정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환경노출조사 등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치료비 지급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치료비 지급 기준

가. 치료비는 청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의료행위가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이하 “건강피해”라고 한다) 질환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직접 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진단명, 진료기록, 처방전, 검사결과 및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의료행위(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 1) 해당 의료행위가 건강피해와 의학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해당 의료행위가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 3) 해당 의료행위가 건강피해의 중증도 및 치료 경과에 비추어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 4) 해당 의료행위가 통상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

나. 직접 치료와 의료행위의 관련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급검토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치료비 지급 범위

가. 건강피해 질환의 직접 치료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한 진찰
- 2)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과 관련된 검사
- 3) 약물치료 및 치료재 사용
- 4) 처치·수술 및 시술
- 5) 재활치료
- 6) 산소치료 등

나. 제2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접 치료비는 다음과 같다.

- 1) 건강피해 치료 목적으로 지급한 비급여대상 비용
- 2)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다

음에 해당하는 기구 등에 대한 구입 또는 대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따른 요양비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 또는 구입 비용을 인정하되, 구입한 기구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고려한다.

가) 인공 호흡기

나) 산소 공급장치

다) 흡인기

라)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구등

호흡근육 훈련기(Respiration muscle trainers)
산소 발생기 및 인공호흡기 호흡용 보조기구 연결관(connectors)
기관절개창 삽입관(Tracheostoma cannulas)
기관절개창 보호기(Tracheostoma protectors)
기관 절개창 소독용 의료소모품
석션 카테터(catheter)
석션 밸브(valve)
대소변 수집용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collecting urine and faeces)
소변 처리기기(Urine diverters)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Assistive products for absorbing urine and faeces)
수동휠체어(Manual wheelchairs)
산소포화도 측정기(Oximeter, Pulse oximeter)
의료용 흡입기(Nebulizer)
욕창 예방용 보조기구(Assistive products intended to manage tissue integrity)
자세보조용구(Seating and positioning systems)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과 의학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질환의 치료비
- 2) 일반적인 건강관리, 예방 목적, 영양공급 목적의 의료행위 비용(건강검진, 예방접종, 비타민, 보신제 등)
- 3) 임상시험 약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처방 및 행위

- 4) 미용 또는 성형 목적 등 건강피해 치료와 관련이 없는 비용
- 5) 숙박비·식비·교통비 등 건강피해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 6) 비급여 병실 비용. 다만, 감염 우려 등 의학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고, 특실 이용 시에는 1인실
기준으로 산정한다.
- 7) 제증명수수료
- 8) 그 밖에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 결과 직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간병비 지급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간병비 지급 기준

가. 간병비는 청구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워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이 경우 의사 소견, 진료기록 및 건강상태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간병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간병 필요성, 제3호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 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 1) 건강피해로 인한 간병 필요성
- 2) 피해자의 증상 및 질환의 중증도
- 3) 피해자의 기능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 4) 주치의의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
- 5) 건강상태조사 결과

다. 피해자의 기능상태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지급한다.

2. 간병비 지급 범위

가. 간병비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로 인한 간병 필요성, 제3호에 따른 간병 필요등급 및 간병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중환자실 입원기간
- 2) 회복실 입원기간
- 3) 폐쇄병동 입원기간
-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기간
- 5) 피해자의 상태가 건강피해가 아닌 개인 질환으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간병 필요등급 및 지급 금액

가. 간병 필요등급

간병 필요등급	간병 필요등급 기준
간병 1등급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체위 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간병 2등급	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간병 3등급	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간병비 지급금액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79,590원	66,320원	53,060원
가족·기타 간병인	69,370원	57,810원	46,250원

비고

- 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에 필요한 요양급여기준(이하 “간병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호나목이 개정전까지 변경된 간병요양급여기준을 적용한다.
- 전문간병인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공요청 자료(제45조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4.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원)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출소(원)일, 수용여부에 관한 자료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7.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관련 자료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한 사람에 대한 자료
9.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관련 자료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련 자료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 자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에 관한 정보
13. 법령에 따른 급여,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및 급여에 관한 자료

-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보수, 보험료, 자격정보 등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받는 급여·보상·지원에 관한 자료
- 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 마.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 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료
- 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 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급에 관한 자료
- 자. 「결핵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자료
- 차.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 카. 「모자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자료
- 타.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 14.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세·환급자료
- 15.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난·재해 관련 자료
20.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약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과태료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52조 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장 국외이전	법 제52조 제1항제2호	1,000

사실을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744